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07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1층
신라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은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